



비양도 도항선 분쟁... 관공선 뜰까?

비양도 제1선사 측 제주시 상대 다시 소송 제기 市 "분쟁 계속되면 4월부터 점·사용 연장 불가"

속보= 비양도 도항선을 둘러싼 다툼을 끝내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마을 항구 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제주시의 방침에도 제1도항선사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비양도 천년랜드(이하 천년랜드)는 지난달 23일 제주시를 상대로 '시가 비양도해운 측에 새롭게 내준 마을 항구 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과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제주시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13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부터 진행했다.

천년랜드는 지난 2017년 한림항-비양도 항로에 가장 먼저 취항한 이른바 제1선사이고, 비양도해운은 뒤이어 취항한 제2선사다.

지난해 11월 8일 첫 취항한 제2선사인 비양도해운은 소송에 휘말려 3일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당시에도 천년랜드는 "시가 제2선사에 부당하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줬다"며 운항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시는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비양도해운 측에 지난해 내준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올해 초 비양도해운이 새로 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청을 수용했다. 비양도해운이 현재 이용하는 항구는 앞서 허가 받은 곳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다.

천년랜드 측은 이번에도 시의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년랜드 측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수용할 때 공유수면 법률이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이익 보장과 과당경쟁 방지에도 목적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시가 제2선사에 다시 허가를 내준 건 법원의 이번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천년랜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제1선사와 2선사가 서로 혐의해 도항선 분쟁을 끝내라'는 시의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제 관심은 시의 대응 방안이 쏠린다. 시는 도항선 분쟁이 계속되면 오는 3월 31일 만료하는 제1선사와

2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모두 연장하지 않고 한림항-비양도 항로에는 행정선을 띄워 주민과 관광객을 실어 나를 계획이다.

이미 시는 올해 1월 두 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갱신 또는 새롭게 내줄 때 이런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관련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점·사용방법과 관리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나와있다. 시 관계자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준만큼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점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천년랜드 측 변호사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왜 2선사와 협의해야 하느냐"면서 "이런 조건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상민기자



제주시 중앙로 등문시장 입구 맞은편 도로에 정차해 고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김현석기자

동문시장 인근 교통체증 극심

단속 CCTV 설치 안돼 택시 등 도로 한쪽 점령

동문시장 인근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로에서 동문재래시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있는 현대약국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늘 줄지어 정차돼 있다. 해당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폐쇄회로)TV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구간' 알람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또 다른 동문시장 입구인 탐라문화광장 맞은편에는 CCTV가 설치돼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지만, 제주중앙지하상가와 동문시장 물건 상하차 작업을 하는 탐차 등이 도로 가장자리를 점령하고 있어 사실상 1개차로의 도로로 마찬가지이다.

주민 박모(47)씨는 "택시와 탐차 등으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며 "시장 고객을 위한 택시 전용 승차장이라든지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하든지 행정에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동문시장 인근 중앙로 방면에는 버스탑재형 카메라로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버스가 배차 간격이 30분가량으로 운행되면서 사실상 30분 이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힘든 실정이다. 또한 물건 상하차 작업이 많은 동문시장과 지하상가의 특성상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 교통체증 현상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택시 등이 정차하며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중앙로 구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물건 상하차 작업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는 관련 부서와 동문시장 상인회 등 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건축자재 흠친 3명 집유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 절도와 방실 집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8일 오후 1시 쯤 제주 시내 한 건물 창고에서 B씨 소유 1400여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흠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무상으로 창고를 빌려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 꼭 이겨 냅시다"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주도연합청년회 회원들이 '코로나19' 예방캠페인을 벌이며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손세정제를 나눠주고 있다.

교육청, 2019년 학원·개인과의 지도 점검결과 학원비 초과 징수하고 무신고 운영도...

위법행위 총 224곳 적발

신고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기준에 어긋나게 학원비를 받은 도내 학원, 개인과의 등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이 강화되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한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교습자를 지도 점검한 결과 1903곳 중 224곳이 적발됐다. 전체 10곳 중 1곳 이상이 위법 행위로 경고(186곳), 과태료(25곳), 고발(19곳), 교습 정지(16곳) 등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학원설립자, 강

사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진행되는 정기연수 불참이 8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41곳), 교습비 변경 미등록(28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학원 외에 소규모 교습소나 개인과의 등도 신고 대상이지만 이를 어긴 19곳도 적발됐다.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19곳)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7곳)해 적발되기도 했다.

지도점검 업무를 맡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실제 수업을 한 시간보다 교습비를 많이 받거나 교습비에 행사비, 교재비 등을 추가해 받

는 경우도 있었다"며 "미등록 개인과의 등에 대한 민원이 신고도 전보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 업체에 대한 민원이 늘면서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법 행위로 적발된 도내 학원 등은 2017년 92곳에서 2018년 157곳, 지난해 224곳으로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그 영향"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halla.com

"비정규직 불법파견 규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업기술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에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개월

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근무를 했다"며 "그러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라북도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해당 노동자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파견 사업자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인 제주노동기술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한 것"이라며 "이는 파견법의 중요한 제한조건을 어기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 받아 사용한 것으로 한마디로 불법 파견"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석기자 ik02@ihalla.com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글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리 201-1번지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

제주도정 소식

무주택의 신혼부부·저출산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09:00~18:00 근무시간내)
- 신청 기간: 2020. 2. 21.(금)까지 / 문의: 건축정책과(☎710-269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 수칙

-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② 기침할 때, 손이 아닌 옷소매로!
- ③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4·3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안내

- 발급 대상: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 신청 방법
 - 도내 거주자: 주소지 읍·면·동
 - 도외 거주자: 희생자의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등기 우편 접수)
 - 국외 거주자: 제주도청 4·3지원과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진 2매(3X4)
 - 신청자가 여러명 또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 신청서: 읍·면·동 비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유족증" 검색
- 증 소지시 혜택
 - 항공 할인: 제주항공 (생존희생자 50%, 유족 30%, 제주기점에 한함)
 - 관광료 면제(생존희생자 및 유족):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등
 - 주차장 감면(생존희생자 및 유족): 도내 공영주차장 50%
 -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100%
 - 절물자연휴양림: 생존희생자(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유족(입장료 면제)
 - 제주왕 연안·국제 여객터미널: 주차료 50%

2020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안내 (슬레이트 철거처리 가구당 344만원 지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전액 지원)

- 사업신청: 2.5.~사업비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①읍면동 신청 ⇒ ②지원대상자 확정 ⇒ ③철거업체 방문(전문 업체) ⇒ ④면적조사 및 철거확정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저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우선하여 지원
-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지원되나,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음
- 2020년에 달라지는 내용
 - ① 지원 대상에 참고 등 비주택에 대한 철거·지원
 - ② 일반가구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상한액을 336만원에서 344만원으로 상향
 - ③ 실제 철거비용 잔액을 지붕개량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
- 문의: 생활환경과: 710-6086

소상공인 건강검진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 지원자격: 제주도내 소상공인으로 개업일로부터 3년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 4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간이과세자)
-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 비용 25만원 지원
- 모집인원: 200명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758-5710-1)